

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(제32조제4항 관련)

1. 대기오염물질

구 분	측정횟수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	분기 1회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	분기 1회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	반기 1회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	매년 1회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	매년 1회

2. 수질오염물질

구 분	측정횟수
1일 폐수배출량이 2,000m ³ 이상인 배출구	분기 1회
1일 폐수배출량이 700m ³ 이상, 2,000m ³ 미만인 배출구	분기 1회
1일 폐수배출량이 200m ³ 이상, 700m ³ 미만인 배출구	반기 1회
1일 폐수배출량이 50m ³ 이상, 200m ³ 미만인 배출구	매년 1회
1일 폐수배출량이 50m ³ 미만인 배출구	매년 1회